

노인인권보호지침

수급자 보호자용

1. 노인인권이란?

“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수 있는 살아갈 권리”

- ①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- ②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③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
- ④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⑤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⑥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⑦ 통신자유에 대한 권리
- ⑧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⑨ 소유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
- ⑩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⑪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⑫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2. 노인인권보호 : 존엄성과 차별 금지, 자기결정권, 안전한환경

3. 노인학대의 유형

- ① 신체적학대 : 물리적 힘을 사용해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(폭행, 감금)
- ② 정서적 학대 : 모욕,협박, 무시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
- ③ 성적 학대 : 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
- ④ 경제적학대 : 노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착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
- ⑤ 방임 및 유기 : 노인의 기본적인 필요(의식주, 의료)를 충족시키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행위

4. 실천 방안

- 시설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,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.
- 가족은 면회·상담을 통해 노인의 권리 보장을 지원해야 한다.

5. 노인학대 예방

- ① 정기적인 관심과 모니터링
 - ◎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노인의 생활 환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작은 변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.
- ② 교육과 인식 개선
 - ◎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이해하고, 노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특히 돌봄 제공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.
- ③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활용

◎ 노인학대 신고 핫라인(1577-1389)이나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,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 지역사회의 협력도 중요합니다.

④ 추가 예방 전략

◎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(방문요양, 주간보호센터 등)를 활용해 가족의 부담을 분산시키고, 노인 인권 교육을 통해 예방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.

6.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

• 학대로 인하여 어르신이 다쳤을 경우 → 응급조치를 한다 →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한다 → 노인전문기관에 신고한다(신고전화번호 : 1577-1389, 112, 129, 110 등)

7. 노인학대 신고 방법

① 신고전화

- 경찰서 : 112
-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신고센터 : 129
-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: 110

② 앱을 통한 신고 : ‘나비새김 노인지킴이 앱’을 통해 증거(사진, 영상 등)를 첨부해 신고 가능

③ 방문신고 :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

8. 신고 시 유의사항

- 증거확보 : 학대 정황(상처, 다툼 소리, 금품 착취)을 사진·영상·음성 녹음으로 기록
- 개인정보 보호 :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며, 익명 신고도 가능
- 즉시 조치 : 학대 의심 시 전문가나 당국에 상담을 요청하고,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직접 개입은 피해야 함

9. 노인학대 신고절차

① 신고 방법

- 전화 :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, 경찰서(112), 정부민원안내콜센터(110)
또는 모바일 앱 “나비새김 노인지킴이” 사용.
- 방문 :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접 방문.

② 신고 내용

- 학대피해노인의 이름, 주소, 연락처, 학대 상황(신체적·정서적·경제적 등) 및 증거 자료 제공.

③ 신고자 보호

-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보호되며, 의사에 반해 노출 시 법적 처벌 가능.

④ 신고 후 절차

- 현장조사 → 학대여부 판단 → 서비스 제공(상담, 법률, 의료 등) → 평가 및 종결 → 사후관리.

⑤ 의무 신고자

- 노인복지시설·의료기관 종사자,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신고 의무자이며,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.